

수송·보관·판매·사용의 적절한 규제

안전확보를 위한 취급제한기준



이 정 운
농약연구소 농약생물과장

농 약은 이것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사람과 직접 사용하는 농민 그리고 생산된 농산물을 이용하는 일반 소비자의 건강보호 차원 뿐만 아니라 환경보전이라는 측면에서 인축과 환경에도 안전하여야 한다.

농약 사용으로 인하여 생길수 있는 피해는 농작물의 약해, 꿀벌이나 누에 및 천적 등의 유익한 곤충을 죽게 하는 일, 농약을 다루는 사람과 살포하는 농민의 중독 가능성, 농약에 의한 환경오염 그리고 살포 농약이 농산물 중에 잔류되어 식품과 가축 사료를 오염시키는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와같은 농약의 부작용을 없애거나 최소한으로 줄이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농약의 판매자, 취급자 및 사용자 모두가 농약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바르게 취급, 사용하여야 한다.

농약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약은 고시, 사용되기전 농약의 개발과정중에 실험동물이나 물고기에 대한 급성, 아급성, 만성독성시험과 장기간에 걸친 발암성, 최기형성, 번식독성 등의 특수독성시험 그리고 피부, 안구, 신경독성 등 자극성시험 및 농작물과 환경등 농약의 토양, 수중잔류성시험을 정밀하게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농약은 개발단계에서부터 엄격하고 광범위한 안전성시험을 거쳐 안전한 약제만을 선별하여 실용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험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시 국내 농업환경

여건에 맞는 적용성 시험을 거쳐서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농약만을 생산, 농민에게 공급함과 동시에 품목별로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을 고시하여 사용토록 하고 있다.

이미 유통 사용중인 농약이라도 국내외적으로 작물약해 유발 등의 부작용과 안전성면에서 국민보건이나 환경보전상 위해성이 제기되면 외국의 관련정보 수집과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농약관리위원회 전문분과위원회에서 수집자료를 토대로 유익성과 위해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적절한 규제조치를 취하고 있다.

농약을 안전하고 적절하게 사용·취급토록 하기 위하여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 16조에 의거 품목별로 독성구분에 따른 공급대상, 사용제한 농작물, 수송, 보관, 판매 및 사용상의 규제를 위한 취급제한기준을 고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농약의 독성구분은 제품농약을 대상으로 침입경로에 따라 척추동물에 대한 급성경구, 경피 및 흡입독성시험 결과를 가지고 국제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의 분류기준을 근거로 농약관리법에 의거 맹독성, 고독성, 보통독성의 3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물고기에 대한 어독성시험 결과를 토대로 하여 어독성을 I급, II급 및 III급으로 분류하고 이와같은 분류기준에 따라 인축과 수질환경및 어패류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

1993년 현재 고시되어 있는 농약

530개 품목중에서 맹독성 농약은 한 품목도 없고 고독성농약이 22품목이며 나머지 508품목은 독성이 비교적 낮은 보통독성에 속한다.

고독성 농약

농약의 제조나 판매 또는 살포중에 흡입 및 접촉에서 오는 중독과 잘못하여 마시는 등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해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고독성농약은 수송, 보관, 판매 및 사용중의 취급제한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규제하고 있다.

수송시에는 식료품, 사료, 의약품, 인화물질과 혼적수송하거나 과적수송하여서는 안되며 보관할 때에는 환풍시설과 잠금장치가 완비된 창고에 "고독성 농약창고"임을 표시하고 보통독성농약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만약 동일한 창고내에 보관할 경우에는 칸막이를 설치하여 구분하여야 하고, 창고면적 9.9㎡당 ABC분말소화기(3.3kg) 1대씩을 비치하여야 한다. 판매는 잠금장치가 있는 별도의 진열장("고독성 농약" 표시)을 설치하여 진열판매 하여야 하고, 판매시에는 구매자의 성명, 주소 및 품목명, 판매수량을 기록하여야 한다. 취급 판매시는 사단법인 농약판매협회장(농협농약판매관리자는 농협중앙회장)이 실시하는 농약 안전사용 교육을 매년 받은 농약판매관리자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시·군 농촌지도소장이 실시하는 영농교육시 농약안전사용 특별교육을 받은 농민에게만 판매하여

야 하고, 이 교육을 받은 농민만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적용대상작물 이외에는 절대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특히 인화농정제 및 메칠브로마이드혼중제는 조달청, 국립농산물검사소, 국립식물검역소, 한국담배인삼공사, 농협, 사단법인 한국수출입식물방제협회와 수출입식물방제업자에 한하여 공급이 가능하며 고독성 농약을 사용할 수 있는지는 위의 공급대상기관 종사자와 농약제조업(수입업)허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 단, 실수요자가 사용할 경우에는 국립농산물검사소, 국립식물검역소, 농약제조업자(수입업자)의 책임지도하에 사용하여야 한다.

보통독성 농약

수송시 취급기준은 고독성농약과 같으며 보관은 환풍시설과 잠금장치가 완비된 창고에 "농약창고"임을 표시하고 맹·고독성농약과 구분 보관하여야 한다. 그리고 창고면적 9.9㎡당 ABC분말소화기(3.3kg)1대씩을 비치하여야 하고 고독성농약과 구분하여 진열, 판매하여야 한다.

어독성 농약

어독성 I급 농약은 필히 구매자의 성명, 주소 및 품목명, 판매수량을 기록한후(중자소독약은 제외)판매하여야 하고 사단법인 농약판매협회장(농협농약판매관리자는 중앙회장)이 실시하는 농약 안전사용 교육을 매년 받은 농약판매관리자만이 취급,

판매할 수 있다. 그리고 양어장, 저수지, 상수취수원, 해역등으로 직접 흘러들어갈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어독성 II급 농약은 양어장, 저수지, 상수취수원, 해역등으로 근거리에서 직접 흘러들어갈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일시에 광범위하게 사용하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어독성 III급 농약은 통상 사용되던 상수보호구역내 논에서 항공방제용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수질오염성 농약

구매자의 성명, 주소 및 품목명, 판매수량을 기록한후 판매하여야 하고 사단법인 농약판매협회장(농협농약판매관리자는 농협중앙회장)이 실시하는 농약 안전사용교육을 매년 받은 농약판매관리자만이 취급, 판매할 수 있다. 그리고 논에서는 일체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특히 환경처 장관이 지정하는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보다 나은 식생활과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약 사용은 필수적인데 어떻게하면 병해충이나 잡초를 효율적으로 방제하면서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자연환경생태계를 보전할 것인가? 농약의 판매자, 취급자, 사용자 모두가 농약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적정하게 취급,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농약정보**